

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국민대학교 「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련한 보상금 산정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비용부담) <삭제 2017.01.01.>

제 3 조 (실시·처분보상금) ①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·처분보상금은 공헌이익액 또는 처분이익금의 70%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교직원이 자유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한 경우에 실시·처분보상금은 공헌이익액 또는 처분이익금의 70%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.

③ 실시·처분보상금은 당해 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에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지급하되, 매년 분할 지급할 수 있다.

제 4 조 (보상금의 조정) 제3조의 보상금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발명의 경위와 내용, 발명자의 본교 발전에 대한 기여도, 실시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세칙은 2007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1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